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22

운영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7월 18일 裴基漢議員外 10人發議
- 나. 회부일자 : 1994년 7월 19일
- 다. 상정일자 : 1994년 7월 22일<운영위원회 2차 회의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地(제안설명자 : 裴基漢議員)

#### 가. 提案理由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제14317호, 94.7.6)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개정(인상)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개정(인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地方自治法 第32條(議員의 議政活動費등)가 '94. 3. 16(法律 4741호)에 改正되었고, 議員의 國·内外 旅費 手當 및 日費에 대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5條(日費와 旅費의 支給)가 '94. 7. 6 改正公布됨에 따라 永登浦區 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關한 條例가 改正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第6條(日費의 支給基準)이 30,000원에서 50,000으로 引上되었으며
2. 別表5, 別表6 같이 國·内外 旅費 및 手當이 引上되었으며
3. 第8條 第1項 內容중 別表3이 削除된 것은 國內旅費規定은 公務員旅費 調整比率에 따라 條例로 調整하여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國內出場거리를 표시한 別表3을 削除케 되었으며,
4. 國內旅費中 從前의 甲地, 乙地가 없어지고 同日하게 되었으며 別表1에서 食料가 削除되고 國 外旅行地의 等級區分에 國家와 都市가 追加되었으며,
5. 附則을 新設하여 施行令 公布日에 맞춰 適用함으로 日費와 旅費을 支給하는데 蹉跌이 없도록 하였음

###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	-----

제출년월일 : 1994. 7. 18

제출자 : 배기한의원 외 10인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제14317호, 1994. 7. 6)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가.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 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개정(인상)
- 다. 국외여비지급기준표 개정(인상)

####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의한 별표4, 별표5, 별표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여행을 말한다)시에는 별표1의 여비를 지급한다.

#### 【별표1】

(단위 : 원)

구분	현교 통 (1일당)	지비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6,500		20,700	11,000
의원	6,500		16,200	10,500

####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중 숙박비와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90	나등급 78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가등급 114	가등급 81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별표2】의 비고 1항 가호중 “홍콩” 다음에 “모스코바”를  
 나호의 (3)중 “노르웨이”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를  
 나호의 (4)중 “수단” 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다호의 (1)중 “뉴질랜드” 다음에 “중국, 베트남”를  
 다호의 (3)중 “회랍” 다음에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를  
 다호의 (4)중 “모티시어스” 다음에 “잠비아, 알제리”를  
 라호의 (1)중 “네팔” 다음에 “몽골”를  
 라호의 (4)중 “소말리아” 다음에 “나미비아, 탄자니아”를 각각 추가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 ..... ..... ..... [삭제] .....	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한다.	제6조(일비지급기준) ..... ..... 50,000원 .....	제8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u>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u>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영등포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은 말한다.	제8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u>의회소재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시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u>